

##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의 결정모형

최황택(주저자)  
 세종사이버대 조교수  
 (12bhag@naver.com)  
 이태희(교신저자)  
 국민대  
 (thlee@kookmin.ac.kr)  
 홍창목(공저자)  
 국민대  
 (cmhong@kookmin.ac.kr)

본 연구의 목적은 상장기업 및 일부 비상장기업들에 적용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보수가 감사보수와 차별적인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가를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2004년부터 국내 기업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는 내용상 외부감사의 내부통제제도의 평가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고, 합리적 수준의 감사위험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외부감사에 비해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에 대한 위험은 현저하게 작으므로 감사대상회사의 특성과 보수 결정요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 특성변수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에 대한 설명력을 검토하고, 동일한 변수들의 감사보수에 대한 설명력 결과와 비교해 본다.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결정모형을 감사보수 결정모형과 비교한 결과, 전자에서는 소송위험변수, 사외이사비율, 경영자 유형, 대주주지분율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에 비해 후자에서는 소송위험변수와 대주주지분율만이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기업규모, 자산증가율, 자회사 수 등과 같이 기업의 구조를 나타내는 변수들은 감사보수 결정모형에서는 설명력을 가지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결정모형에서는 상대적으로 설명력을 덜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한 두 가지 결과는 감사위험을 통제해야 하는 외부감사의 경우에는 기업규모와 같은 구조변수들이 더 설명력을 갖지만 한계적 지불위사를 나타내는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결정모형에서는 소송위험변수, 사외이사비율, 경영자유형, 대주주지분율과 같은 clientelle 변수들이 더 설명력을 가짐을 시사한다.

주제어: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감사보수

###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상장기업 및 일부 비공개기업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보수가 재무제표감사보수와 차별적인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가를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국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2004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제도, 대표소송제도 등과 함께 경영자의 회계분식을 억제하는 주요 제도이다. 회사의 경영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고(외감법 제2조의2 ③), 이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외감법 제2조의2 ④). 또한 외부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를 수행할 때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운영 실태에 관한 보고 내용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외감법 제2조의3). 경영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 기준」에 따라 기업의 내부통제제도를 구축·운영한 결과를 사업보고서 제출 시 인증·서명하고,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 검토기준」에 근거하여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검토보고서를 통해 표명한다.<sup>1)</sup>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책임과 관련한 국내 제도는 내용상 미국의 감사기준서 2호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전반적 내용은 유사하나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의견이 아닌 검토의견을 표명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sup>2)</sup>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가 별도의 법 체계에 의해 도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기존의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내부통제제도 평가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가 내부통제제도 평가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고 이것이 감사서비스시장에서 평가되는 지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밝혀진 바 없다. 만약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행위가 재무제표감사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늘 해오던 내부통제제도의 평가와 다를 바 없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는 불필요한 것이 될 수 있다. Kinney and Shepardson(2011)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통적인 재무제표감사만으로도 충분히 재무제표왜곡사항을 적발할 수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규제가 비경제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재무제표감사과정에서의 내부통제제도 평가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 기본적인 차이는 전자가 재무제표정보라는 결과물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후자는 그러한 결과물이 산출되는 과정의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모두 재무제표의 중대한 왜곡을 방지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이려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작성, 보고하고 감독하는 담당 부서도 거의 동일하고, 감사 및 검토를 동일 외부감사인이 한다는 측면도 있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가 재무제표감사상의 내부통제제도 평가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것이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가를 파악하는 것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sup>3)</sup> 만일 내부회계관리

- 1) 상장회사협회 산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는 2005년 6월 23일과 12월 27일에 각각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 해설서」를 발표하였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2005년 6월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을 제정하였다.
- 2) 미국의 경우, Sarbanes-Oxley법(SOX)의 후속작업의 하나로 조직된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PCAOB)가 2004년 3월과 2007년 5월에 각각 감사기준서 2호와 5호를 공표하였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07년 5월에 「Guidelines for ICFR」이라는 경영자를 위한 평가 지침을 승인하였다.
- 3) 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structure)는 재무보고의 신뢰성은 물론이고,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 법규의 준수 등과 같은 여러 목표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는 재무보고의 신뢰성만을 목표로 기업의 재무보고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만을 대상으로 한다.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과정에서 내부통제제도를 이해하고 평가한 후, 효과성이 없으면 입증사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수행한다. 따라서 재무제표감사에서 이루어지는 내부통제제도의 평가는 합리적 감사위험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 감사를 위한 것으로서, 기업의 내부통제제도가 취약하더라도 감사인이 입증절차를 확대 실시한다면 재무제표의 중대한 왜곡을 방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재무제표감사과정에서 감사인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평가는 하지 않아도 되며, 한다고 해도 그 결과를 외부로 공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감사인의 입증사범위의 성격, 범위 및 시기를 결정하는데 사용할 뿐이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그 검토결과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구하는 목적은 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기준」이 정한 최소한의 품질수준을 충족시키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제도의 검토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재무제표감사의 내부통제제도 평가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를 감사보수의 일부로 인식할 것이나, 반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가 내부통제제도 평가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것이 반영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보수가 차별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 특성변수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에 대한 설명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동일한 기업특성 변수들을 사용하여 얻은 감사보수에 대한 설명력과 비교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가 재무제표감사와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은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합리적 수준의 감사위험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재무제표감사에 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위험은 현저하게 낮으므로 감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지불의사(willingness-to-pay)는 재무제표 감사보다는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결정에서 보다 민감하게 나타날 것이며, 기업 특성변수들(clientele 변수들)의 설명력도 클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와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내부통제제도 평가 간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중첩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추가 지불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행위의 유효성을 나름대로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정호와 양해성(2008)이 기업지배구조가 우량할수록 감사보수가 적을 것이라는 가설과 반대의 실증결과를 보고한 것이나, 최승호(2009)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과 감사보수 간에

유의적인 관련성을 찾지 못한 결과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주로 중요한 취약점 존재 여부로 파악해 왔다(조현우와 유경연 2006; 이명곤 등 2007). 이들과는 달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기업들이 외부감사인과 사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업특성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일반적인 기업 상황을 전제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효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업특성변수들과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간의 관계는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효성을 측정하는지에 대한 간접적 증거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재무제표감사보수는 공시되고 있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는 공시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시간과 보수를 재무제표감사시간과 보수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BIG 4 감사인의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무제표감사보수 및 시간과 별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시간과 보수를 별도로 공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절의 연구배경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연구가설을 도출하고, 제3절에서는 연구모형과 주요 변수들의 측정에 대한 설명을 한다. 제4절에서는 실증결과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고, 끝으로 제5절에서 연구의 결론과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 II. 연구배경

### 2.1 선행연구

#### 2.1.1 감사보수의 결정모형 연구

감사보수의 결정요인에 관한 최초의 연구인 Simunic(1980)을 필두로, Francis(1984), Palmrose(1986), Simon and Francis(1988), Copley(1992), Beatty(1989), Pong and Whittington(1994) 등은 감사보수에 관한 중요한 설명변수들로 감사대상회사의 규모와 복잡성, 감사인의 규모, 감사인 변경, 감사의 질 및 계속감사여부 등을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상기한 연구들과 유사한 감사보수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주인기와 최관(1997)은 총자산, 수출비중, 상장 여부, 초도감사여부 및 연결 재무제표감사 등이 감사보수와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감사인의 유형(Big 6)에 따른 차별화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최관과 백원선(1998)은 Big 6와 Non-Big 6간의 감사보수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감사투입시간은 Big 6가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권수영과 김문철(2001)은 1999년 감사보수의 자율화 이후, 감사대상회사의 자산규모, 재고자산과 매출액, 감사인의 명성에 따라 감사보수가 결정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권수영 등(2005)의 연구는 대형회계법인의 감사보수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노준화 등(2003)에서는 초도감사 시에 감사보수가 할인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최정호와 양해성(2008)은 기업지배구조가 우량할수록 감사보수가 적을 것이라는 가설과는 반대의 현상을 관측하였다. 즉, 지배구조가 좋은 기

업일수록 더 높은 감사보수를 지불하는데 이는 이들 기업이 보다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기 때문으로 추정되나 추가적인 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승호(2009)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이 우수한 법인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과 감사시간 간에는 유의한 음(-)의 값이 관찰되었으나, 감사 보수와는 유의하지 않는 음(-)의 관련성을 관찰하였다. 손평식 등(2007)은 한국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의 지배구조평가지수를 이용하여 기업지배구조와 감사보수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는데 기업지배구조가 전체적으로 좋을수록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기업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은 양질의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감사보수를 증가시키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최종원과 이경태(2008)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 비금융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잠재적 소송비용이 회계선택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Basu(1997)의 보수주의 모형과 성과조정 수정존스모형으로 추정된 발생액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임원배상책임보험이 보수주의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고 회계투명성을 향상시켰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강내철(2008)은 소송위험이 높은 감사계약에서 감사인은 소송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감사자원의 투입을 증가시키는지 여부와 그 결과로서 감사보수가 증가하는지를 검증하였다.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높을수록 감사보수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조용언 등(2009)은 소송위험은 감사품질과 양(+)의 관련성이 있고, 감사품질의 대용치인 감사보수와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2005년

이후 우리나라에 도입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때 외부 감사인이 소송건수와 배상액에 훨씬 민감할 것이라고 본다면 제도의 변화와 일관성이 있는 실증결과이다.

해외 논문에서도 감사인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 즉,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비용, 배상이나 보상비 등의 직접비용과 감독당국의 제재, 전문가적 평판의 훼손 등의 간접비용 등이 모두 감사보수에 반영되므로 피감사인의 소송위험이 높을수록 감사보수가 유의적으로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O'keefe et al. 1994; Bell et al. 2001; Seetharaman et al. 2002).

### 2.1.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요구하고 있어 검토의견만을 제시하는 국내의 경우보다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는 Ge and McVay(2005)가 있다. SOX 404가 적용되기 전인 2002년 8월부터 2004년 11월 사이에 경영자에 의해 내부통제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261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요한 취약점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261개 기업의 총 493개 중요한 취약점 중에서 24%가 특정계정과목과 관련한 취약점이고, 교육훈련 취약점이 17%, 연도 말 회계정책과 보고절차가 14%, 수익인식 관련 취약점이 11%라고 보고하였다. Ashbaugh-Skaife et al.(2005)도 SOX 404 이전의 내부통제 미비점을 보고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50.1%가 재무보고마감절차, 계정조정, 매출채권관련, 재고 프로세스와 관련이 있었으며, 30%는 업무분장, 부적

절한 인력, 교육훈련부족 및 모니터링, 7%는 문서화, 5%는 수익인식관련, 3.5%는 IT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Doyle et. al.(2006)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에서 Dechow and Dichev(2002)의 방법에 기초한 발생액의 품질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보다 낮다고 보고하였다. Krishnan and Visvanathan(2008)는 SOX 404가 발효된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과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높을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도 높다고 주장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국내연구는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조현우와 유경연(2006)은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전후의 재량적 발생액의 차이를 분석하고 재량적 발생액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이후에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중요한 취약점을 지닌 기업일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적으로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이명곤 등(2007)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점이 있는 기업들이 대응기업과 비교하여 기업규모, 수익성, 재무건전성, 회계법인의 규모 등에서 차별성이 나타났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한 기업들은 이익조정 및 자본시장에서 평가되는 정보위험과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신현걸(2007)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품질이 이익조정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할수록 이익조정의 정도가 높고 발생액의 품질은 낮다고 주장하였다. 김광호 등(2008)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지를 검토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이 적정 검토의견을 받

은 기업보다 이익조정 크기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모범규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기준이 모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2006년의 검토결과가 2005년의 검토결과보다 신뢰성이 높은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김정애 등(2008)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로 인하여 크게 늘어난 외부감사인의 업무량에 대한 적절한 보수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 변화와 보다 적극적인 실질 지원노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감사팀,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실시와 전문 인력의 충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애와 최종서(2006)는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특성 차이와 회계보수주의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 감사위원회의 특성 차이는 회계보수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이사회 특성 차이가 회계의 보수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김병호(2006)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기업의 이익조정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는데 감사위원회의 설치여부와 독립성은 기업의 이익조정과 유의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사회와 독립성과 이익조정 간에는 한계적 인 음(-)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 2.2 연구가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와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내부통제제도 평가는 각기 다른 법제도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그 내용이 대부분 중첩되며 검토 혹은

평가의 주체도 동일 외부감사인이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의 결정요인들도 감사보수의 결정요인들과 매우 유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의 결정요인들을 선택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가설을 도출하였다.<sup>4)</sup>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나 재무제표감사 모두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이 제공하는 인증서비스이므로 보수수준은 공급측면에서는 감사인이 부담하는 감사위험 혹은 검토위험, 그리고 감사 혹은 검토에 소요될 노력의 크기가 주된 결정요인일 것이고, 경영자의 외부감사인의 인증서비스 품질 수준에 대한 수요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기업특성변수들을 소송위험변수와 지배구조변수로 양분하였으며, 후자를 다시 ①이사회 구성, ②대주주 관련 정도, ③감사위원회의 존재 여부로 세분하였다. 이밖에도 기업규모, 성장률, 자회사의 수 등을 기업의 구조를 나타내는 변수들로 설정하였다.

### 2.2.1 소송위험가설

공급측면에서 감사대상회사의 소송위험이 높으면 외부감사인은 그에 상응하는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이고, 소송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에 대한 투입시간 및 투입인원을 증가시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수가 증가할 것이다. 수요측면에서도 경영자가 소송위험이 높다고 인지한다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며, 감사인의 투입시간 및 투입인원 증가에 따른 높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요구에도 긍정적으로 반

4) 감사실무자들과 본 연구의 연구가설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가설에 대한 타당성을 재확인하는 노력도 하였다.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sup>5)</sup>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에 대한 소송위험의 설명력은 실무 전문가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Big 4의 하나인 A 회계법인의 경우, 예상 감사소요시간을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를 책정하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와 재무제표감사 간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를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보수를 제안한다. 이때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감사대상회사의 기업규모이고, 산업별 또는 기업별 특성에 따른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을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감사보수와 소송위험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강내철, 2008)도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대응 변수로 측정한 잠재적 소송비용과 감사보수 간에 양(+ )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소송위험과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간에 양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다만, 선행연구 등에서 잠재적 소송비용의 측정변수로 사용한 “임원배상책임보험료/총자산” 변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상한이 만드는 비선형성으로 인해 잠재적 소송비용과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간의 선형적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대체하였다.<sup>6)</sup>

가설 1: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업은 미 가입 기업보다 더 많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를 지불할 것이다.

### 2.2.2 지배구조가설-이사회 의 독립성과 전문성

이사회 의 구성 내용(composition)이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에 대한 설명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가설은 이사회 의 구성 내용이 감사보수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로부터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 의 구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각각 이사회 의 ①독립성과 ②전문성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이사회 의 사외이사 비율, 후자를 이사회 에서의 회계전문가 존재 여부로 측정하였다.

이사회 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엇갈린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Krishnan and Visvanathan(2005)은 감사위원회 의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회계전문가가 있을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도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감사위원회 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논리를 이사회 로 확대시키면 이사회 의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회계전문가가 있을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이 높을 것이므로 외부감사인 의 투입시간 및 투입인원이 적게 소요되어 감사보수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에 기초하여 최정호와 양해성(2008)은 기업지배구조가 좋을수록 감사보수가 적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

5) 소송위험이 높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양호해져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검토노력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관계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소송위험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수 간에 실증적으로 양(+ )의 관계가 성립한다면 이는 소송위험의 설명력이 더욱 높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6) 최종원과 이경태(2008)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감사인 을 상대로 한 소송건수나 소송사례가 적어 부채비율 등의 기업특성변수들을 이용한 소송예측모형의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소송위험의 대응변수로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임원배상책임보험료는 소송위험을 평가하는 보험전문가에 의해 산출되었고 상당기간 그 자료가 공표된 점을 고려할 때 신뢰도가 높다고 하였다. 임원배상책임보험료가 높은 기업일수록 소송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수적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고 이를 검증하였으나 반대로 기업지배구조가 좋을수록 감사보수도 커짐을 확인하였다. 손평식 외(2007)의 연구에서도 기업지배구조가 전체적으로 좋을수록 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사회 의 독립성 및 전문성과 감사보수 간의 양(+)의 관계는 감사보수가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기업가치에 대한 신호기제(signalling mechanism)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이사회 의 독립성 및 전문성과 더불어 높은 감사보수의 지출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가치를 시장에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sup>7)</sup> 따라서 이사회 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감사보수가 모두 정보비대칭 상황 하에서 기업가치에 대한 신호기제로 사용된다면 이사회 의 독립성과 전문성과 감사보수 간에 양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평가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가 대체적이지 않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도 기업가치에 대한 신호기제의 하나일 수 있으므로 이사회 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각각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와 양의 관계를 갖는다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2-1: 이사회 의 사외이사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높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를 지불할 것이다.

가설 2-2: 이사회 에 회계전문가가 있는 기업일수록 높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를 지불할 것이다.

### 2.2.3 지배구조가설-대리인비용

대주주지분율이 낮아 소유가 분산되어 있다면 주주와 경영자 간의 이해불일치가 증가하고, 소유주가 경영자를 감독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다(Francis and Wilson 1988). 또한 소유가 분산될수록 자본시장압력이 커져 경영자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익조정 유인이 증가할 가능성도 커진다. 반면에 대주주지분율이 높아지면 대주주의 경영자 감독능력이 커짐은 물론이고, 경영자감독으로 얻는 효익도 커질 것이다(Shleifer and Vishny 1986). 즉, 대주주 자체가 모니터링 기제로 기능하기 때문에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다른 모니터링 수단에 대한 수요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Beasley and Salterio(2001)는 경영자모니터링 기제로서 대주주지분율이 외부감사와 대체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대주주지분율이 커질수록 감사위원회가 수행하는 모니터링도 약화되고, 외부감사인에게 요구하는 감사강도도 감소한다는 실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주주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경영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통제위험이 축소될 것이고 이는 위험프리미엄의 감소와 감사노력의 감소로 이어져 감사보수 및 검토보수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대주주지분율이 증가할수록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대리인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강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sup>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적으로 대

7) Dennis and McConnel(2003)과 Choi et al.(2004) 등은 미국 기업들의 이사회 의 사외이사비율과 Tobin Q로 측정된 기업가치 간에 실증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밝힐 수 없었지만, 한국 기업들을 분석한 박경서 외(2003), 김영규 외(2004) 신선한 외(2004) 등의 연구에서는 양자 간에 실증적인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8) Fama and Jensen(1985)은 소유경영자(대주주)는 전체 주주의 부의 극대화보다 자신의 사적 이익 등을 우선시하므로 소액주주와 이해의 상충으로 인해 대리인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Shleifer and Vishny(1997)도 검증되지 않은 소유경영자의 경영 참여로 이들에 대한 과도한 보상, 특별 배당, 특수 관계자들과의 부당한 거래를 통해 기업의 부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주지분율의 증가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의 감소와 관련성을 보인다면 대주주지분율이 경영자 감독과 보다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sup>9)</sup>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1: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는 감소할 것이다.

경영자에 대한 주주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양자 간의 이해상충을 해소시키기 위해 경영자는 대리인비용의 발생을 감소시키려는 경제적 유인을 갖게 된다. 즉, 경영자지분율이 낮은 전문경영자 기업일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유경영의 많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DeAngelo, 2000; Joh, 2003; 박경서와 백재승, 2001) 대리인비용 측면에서는 소유경영이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따라서 소유경영자 기업일수록 감사보수가 감소하고 전문경영자 기업일수록 감사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평가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가 대체적이지 않다면 소유경영자 기업일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가 낮을 것이고, 전문경영자 기업일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가 클 것이다.

가설 3-2: 전문경영자 기업일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는 크고, 소유경영자 기

업일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는 적을 것이다.

#### 2.2.4 지배구조가설-감사위원회의 존재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하부 위원회로 경영자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며, 공정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를 촉진하여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 회계 및 재무관련 지식을 습득한 감사위원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일수록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철 등(2003)과 전규안 등(2004)은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이익조정을 감소시킨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손성규 등(2004)도 감사위원회의 특성과 회계오류발견 가능성을 검증한 결과 독립성과 전문성은 회계오류 발견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신호영(2006)은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이익조정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Klein(2002)도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익조정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Abbott and Parker(2000)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과 수정재무제표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McMullen and Raghunandan(1996)은 재무보고에 문제가 없는 기업의 감사위원회에 공인회계사가 포함되어 있는 비율이 재무보고에 문제가 있는 기업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Xie et al.(2003)도 감사위원회에 회계와 재무에

9) 대주주지분율과 (기업가치로 평가한) 대리인 비용간의 실증분석 결과들은 양자 간에 선형적이기보다는 비선형적인 관계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주현(1992)은 표본기업들이 대주주지분율이 40%에 이를 때까지는 기업가치가 감소하다가(대리인비용이 증가하다가) 40%를 초과하면서는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대리인비용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재춘(2000)은 대주주 1인의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가치가 감소하다가(경영자안주가설) 42.5%를 지나면서(대리인비용이 감소하면서) 기업가치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정통한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을 때 이익조정이 감소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감사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이익조정 간의 관계의 방향성과는 관계없이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감사위원을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국내 관례를 고려할 때 감사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경영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을 경영자에게 요구하기보다는 외부감사인의 임명 및 감사보수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결정시 권한을 활용하여 외부감사인에게 강도 높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를 요청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간의 관계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4: 감사위원회의 설치 여부는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와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 2.2.5 구조변수

이밖에도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결정모형의 통제변수들로 기업규모, 자산 성장성, 자회사의 수를 사용하였다. 이들 변수들은 재무제표감사에서 감사위험 및 감사의 복잡성과 관련성이 높은 구조변수들이다. 재무제표감사보수에서는 물론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에서도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는 기업규모이다. 회계법인들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의 결정요인에 관한 설문을 한 결과, K법인의 파트너 회계사는 “역시 자산총계와 매출액 같은 기업규모 요인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예상투입시간, 복수회사 수임여부에 따른 할인율 등이 고려된다”고

답변하였다. 기업규모가 커지면 복잡성과 리스크가 커지므로 이러한 요인이 감사소요시간을 더 증가시킬 것이다. 통상적으로 감사보수를 제안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까지 같이 제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규모가 클수록 복잡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투입시간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가 결정될 것이다. 선행감사보수연구들에서처럼 기업규모는 총자산에 자연로그값을 취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자회사 수가 많으면 조직이 복잡해지고 내부거래도 많아짐에 따라 자회사 간의 회계처리에도 복잡성이 더해지고 내부투자계정의 상계에 관한 회계처리도 증가한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성장률이 높으면 기업규모와 위험도 커지는데 이렇게 증가된 규모와 위험수준에 적합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성장률이 높으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비점이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고 괄호안에는 기대부호를 표시하였다.

$$LNIFI_i = \beta_0 + \beta_1 ODI_i + \beta_2 BOD_i + \beta_3 SPECIAL_i + \beta_4 OWNER_i + \beta_5 MGTYP_i + \beta_6 AUDCO_i + \beta_7 SIZE_i + \beta_8 GRW_i + \beta_9 SUB_i$$

(+)            (+)            (+)            (-)            (-)            (+)            (+)            (+)            (+)

- LNIFI*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수의 자연로그 값.  
*ODI* : 임원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1, 아니면 0  
*BOD* :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의 비율.  
*SPECIAL*: 이사회 구성원 중 회계전문가다 존재하면 1, 아니면 0<sup>10)</sup>  
*OWNER* : 대주주 1인과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  
*MGTYP* : 전문경영자 기업은 1, 소유경영자 기업이면 0.  
*AUDCO*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1, 아니면 0.  
*SIZE* : 전기 총자산의 자연로그를 취한 값.  
*GRW* : 총자산증가율(총자산 증가액/전기 총자산).  
*SUB* :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자회사 수가 표본 중위수 이상이면 1, 아니면 0.

### 3.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LNIFI* 이외에도 일부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이는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에 대한 지불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았다.<sup>11)</sup>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의 회귀분석결과와 감사보수 회귀분석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감사보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인 *LNAF*를 사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LNAF*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dart.fss.or.kr)에서 구한 총보수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를 차감한 금액에 로그값을 취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 3.3 설명변수

본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들은 소송위험,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대리인비용, 감사위원회 존재 여부이며, 통제변수로 기업규모 등과 같은 구조변수들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관심변수들에 대한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송위험(*ODI*)은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임원배상책임보험료에 상한이 존재하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와 선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강내철(2008)은 '보험료/보험금'로, 최종원과 이경태(2008)는 '보험료/자산총계'로 정의하였으나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표본기업의 대부분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상한에 속하였으므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각각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의 비율(*BOD*)로 측정하였고, 회계전문가의 존재 여부(*SPECIAL*)로 측정하였다.

대주주지분율(*OWNER*)은 대주주 1인과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합한 지분율을 사용하였다. 전문경영자 혹은 소유경영자를 나타내는 *MGTYP*는 임원진의 지분율이 5% 이상이면 소유경영자 기업, 아니면

10) 단,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전문가의 존재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자발성을 반영하기 위해 0으로 처리하였다. 회계전문가는 회계학교수, 회계법인 파트너 혹은 공인회계사로 정의하였다.

11)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를 총자산으로 나누는 방식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의 증감을 왜곡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를 많이 지불한 대기업은 분모의 크기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를 적게 지불한 기업으로, 반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를 적게 지불한 중소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를 많이 지불한 기업으로 잘못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경영자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표본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했을 때에는 비록 전문경영자 기업이라 하더라도 계열사 지분을 통한 지배로 보아 소유경영자 기업으로 분류하였다(최우석과 이우백, 2005).

감사위원회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AUDCO*는 더미변수로서 총자산이 2조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이어서 감사위원회 설치의 자발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0값을 부여하였다. 이밖에도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변수들인 *SIZE*, *GRW*, *SUB*을 구조변수로 사용하였다.

## IV. 실증분석

### 4.1 표본

본 논문에서 사용한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자료는 우리나라 Big 4 회계법인 중 하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대외비를 조건으로 제공받은 것이다.<sup>12)</sup> 따라서 본 논문의 표본은 소수표본 문제와 자기선택편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이들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들이 귀무가설을 과도하게 기각하도록 만든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국내 최초로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타당성

을 갖는다고 판단된다.<sup>13)</sup>

본 논문에서 사용한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이외의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www.dart.fss.or.kr)과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KIS-VALUE에서 획득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가 존재하는 기업들 중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표본기업을 추출하였다.

-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기업,
- (2)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 (3) 12월 결산법인,
-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수 자료가 있는 기업,
- (5)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서 필요한 재무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업.

금융업과 비12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이유는 표본간 그리고 선행연구와의 비교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며, 나머지 기준은 회귀분석을 위한 자료의 획득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표본의 연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7년에 39개, 2008년에 82개, 2009년에 23개로 총 144 기업-년이 연구에 사용되었다. 3개년 자료가 사용된 기업이 4개, 2개년 자료가 사용된 기업이 42개이며 1개년도의 자료가 사용된 기업이 48개로서 기업 기준으로는 94개 기업이 사용되었다.

12) 동 회계법인은 2007년부터 본부 단위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회계법인 전체적으로는 자료가 집계·관리되고 있지 않아 관리가 되고 있는 일부 본부의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밖에도 Big 4의 다른 회계법인들에게도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자료를 감사보수 자료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구분관리하고 있어도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정책으로 인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13)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자료가 현재 공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계법인의 내부자료를 사용한 것은 현실적으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Big 4 자체의 내부통제를 고려해 볼 때 비록 공시된 자료는 아니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시된 감사보수와 자산 등에 비추어 이상 수치라고 판단되면 자료를 제공해준 회계법인의 제검토를 거치고, 해당회사에 대하여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최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회계법인의 내부자료를 이용한 대표적인 다른 연구로는 소송위험과 파트너시간투입간의 관계를 연구한 이경태 등(2007)이 있다.

기업-년을 기준으로 한 표본의 산업별 분포는 전자부품·컴퓨터·제조업이 11.81%(17개)로 가장 많고, 기타기계제조업이 10.4%이며, 그 다음으로 출판·영상 9.03%(13개), 음식료품제조업이 7.64%(11개), 백화점 등 소매기업 6.94%(10개), 가스제조업 5.56%(8개), 영상오디오출판업과 자동차부

품제조업이 각각 4.86%(7개), 전기 장비제조 및 전문서비스 기업이 각각 4.17%(6개), 1차 금속, 도소매, 정보서비스가 각각 3.47%(5개), 음료제조업, 화학물질제조업이 각각 2.78%(4개) 등으로 각 산업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표 1〉 산업별 표본분포 (기업-년 기준)

| 산업코드  | 산업         | '07 | '08 | '09 | '07~'09 |        |
|-------|------------|-----|-----|-----|---------|--------|
|       |            |     |     |     | 표본수     | 비율(%)  |
| 10000 | 음식료품제조업    | 4   | 7   | 0   | 11      | 7.64   |
| 11000 | 음료제조업      | 2   | 2   | 0   | 4       | 2.78   |
| 14000 | 의복제조       | 1   | 1   | 0   | 2       | 1.39   |
| 16000 | 목재나무제품제조   | 1   | 2   | 0   | 3       | 2.08   |
| 17000 | 펄프제조업      | 1   | 1   | 0   | 2       | 1.39   |
| 20000 | 화학물질제조     | 1   | 3   | 0   | 4       | 2.78   |
| 23000 | 비금속정밀      | 0   | 1   | 0   | 1       | 0.69   |
| 24000 | 1차 금속제조    | 2   | 3   | 0   | 5       | 3.47   |
| 26000 | 전자부품, 컴퓨터  | 2   | 8   | 7   | 17      | 11.81  |
| 27000 | 의료정밀광학     | 1   | 1   | 1   | 3       | 2.08   |
| 28000 | 전기 장비제조    | 0   | 2   | 0   | 2       | 1.39   |
| 29000 | 기타기계제조     | 4   | 7   | 4   | 15      | 10.4   |
| 30000 | 자동차부품제조    | 2   | 5   | 0   | 7       | 4.86   |
| 31000 | 기타 운송장비 제조 | 1   | 1   | 0   | 2       | 1.39   |
| 32000 | 가구제조업      | 1   | 1   | 0   | 2       | 1.39   |
| 35000 | 가스제조       | 4   | 4   | 0   | 8       | 5.56   |
| 42000 | 전문직공사      | 1   | 0   | 0   | 1       | 0.69   |
| 46000 | 도소매        | 0   | 4   | 1   | 5       | 3.47   |
| 47000 | 소매         | 4   | 6   | 0   | 10      | 6.94   |
| 50000 | 수상운송업      | 0   | 2   | 0   | 2       | 1.39   |
| 58000 | 출판영상       | 2   | 7   | 4   | 13      | 9.03   |
| 59000 | 영상오디오출판    | 0   | 4   | 3   | 7       | 4.86   |
| 60000 | 방송         | 0   | 1   | 1   | 2       | 1.39   |
| 61000 | 통신         | 2   | 0   | 0   | 2       | 1.39   |
| 63000 | 정보서비스      | 1   | 3   | 1   | 5       | 3.47   |
| 71000 | 전문서비스      | 2   | 3   | 1   | 6       | 4.17   |
| 75000 | 사업지원서비스    | 0   | 2   | 0   | 2       | 1.39   |
| 91000 | 스포츠 및 오락   | 0   | 1   | 0   | 1       | 0.69   |
|       | 합계         | 39  | 82  | 23  | 144     | 100.00 |

4.2 기술통계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와 감사보수의 산업별 분포를 연도별로 <표 2>에 요약하였다. 표본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의 전체 평균은 2007년,

2008년, 2009년의 기간 동안 각각 17백만 원, 18백만 원, 16백만 원으로 연도별로 큰 차이나 뚜렷한 증감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동 기간 동안 감사보수의 전체 평균도 각각 140백만 원, 143백만 원, 130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

<표 2>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와 감사보수의 산업별 분포

(단위: 백만 원)

| 산업        | 검토보수 (A) |      |      | 감사보수 (B) |     |     | A/B (%) |      |      |
|-----------|----------|------|------|----------|-----|-----|---------|------|------|
|           | '07      | '08  | '09  | '07      | '08 | '09 | '07     | '08  | '09  |
| 음식료품제조업   | 7.8      | 10.1 | 0.0  | 125      | 94  | 0   | 6.2     | 10.7 | -    |
| 음료제조업     | 7.5      | 7.5  | 0.0  | 115      | 113 | 0   | 6.5     | 6.6  | -    |
| 의복제조      | 7.0      | 2.0  | 0.0  | 120      | 50  | 0   | 5.8     | 4.0  | -    |
| 목재나무제조    | 7.0      | 7.5  | 0.0  | 90       | 79  | 0   | 7.8     | 9.5  | -    |
| 펄프제조업     | 10.0     | 20.0 | 0.0  | 90       | 90  | 0   | 11.1    | 22.2 | -    |
| 화학물질제조    | 9.0      | 7.7  | 0.0  | 45       | 150 | 0   | 20.0    | 5.1  | -    |
| 비금속정밀     | 0.0      | 12.0 | 0.0  | 0        | 68  | 0   | -       | 17.7 | -    |
| 1차 금속제조   | 42.5     | 95.7 | 0.0  | 218      | 545 | 0   | 19.5    | 17.6 | -    |
| 전자부품, 컴퓨터 | 5.0      | 29.8 | 27.6 | 74       | 244 | 226 | 6.8     | 12.2 | 12.2 |
| 의료정밀광학    | 40.0     | 50.0 | 40.0 | 400      | 490 | 465 | 10.0    | 10.2 | 8.60 |
| 전기 장비제조   | 0.0      | 6.5  | 0.0  | 0        | 43  | 0   | -       | 15.1 | -    |
| 기타기계제조    | 10.3     | 11.3 | 7.0  | 76       | 71  | 57  | 13.6    | 15.5 | 12.3 |
| 자동차부품제조   | 34.0     | 20.6 | 0.0  | 307      | 168 | 0   | 11.1    | 12.3 | -    |
| 기타운송장비제조  | 45.0     | 30.0 | 0.0  | 245      | 245 | 0   | 18.4    | 12.2 | -    |
| 가구제조업     | 3.0      | 3.0  | 0.0  | 52       | 55  | 0   | 5.8     | 5.5  | -    |
| 가스제조      | 18.3     | 20.0 | 0.0  | 119      | 124 | 0   | 15.4    | 16.1 | -    |
| 전문직공사     | 10.0     | 0.0  | 0.0  | 61       | 0   | 0   | 16.4    | -    | -    |
| 도소매       | 0.0      | 17.3 | 5.0  | 0        | 79  | 50  | -       | 21.9 | 10.0 |
| 소매        | 11.0     | 11.7 | 0.0  | 187      | 180 | 0   | 5.9     | 6.5  | -    |
| 수상운송업     | 0.0      | 25.0 | 0.0  | 0        | 230 | 0   | -       | 10.9 | -    |
| 출판영상      | 31.3     | 8.9  | 5.6  | 93       | 64  | 45  | 33.7    | 13.9 | 12.4 |
| 영상오디오출판   | 0.0      | 15.5 | 11.7 | 0        | 86  | 72  | -       | 18.0 | 16.3 |
| 방송        | 0.0      | 3.0  | 16.0 | 0        | 53  | 66  | -       | 5.7  | 24.2 |
| 통신        | 20.0     | 0.0  | 0.0  | 179      | 0   | 0   | 11.2    | -    | -    |
| 정보서비스     | 9.0      | 16.3 | 10.0 | 73       | 126 | 87  | 12.3    | 12.9 | 11.4 |
| 전문서비스     | 17.5     | 22.0 | 11.0 | 138      | 201 | 129 | 12.7    | 11.0 | 8.5  |
| 사업지원서비스   | 0.0      | 3.5  | 0.0  | 0        | 40  | 0   | -       | 8.8  | -    |
| 스포츠 및 오락  | 0.0      | 19.0 | 0.0  | 0        | 199 | 0   | -       | 9.6  | -    |
| 평균        | 17       | 18   | 16   | 140      | 143 | 130 | 11.8    | 12.6 | 12.0 |

리제도검토보수와 감사보수의 연도별 추이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시장에서의 양자 간의 변화에 기인하기보다는 감사인 변경 등이 반영된 표본기업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 기간 동안 감사보수 대비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의 연도별 평균은 각각 11.8%, 12.6%, 12.0%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결정의 출발점이 감사보수의 10%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전문가 면담의 결과와 일관되는 수치이다. 그러나 해당 비율의 산업별 분포는 최하 4.0%부터 최고 33.7%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산업별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본기업을 살펴본 결과, NASDAQ에 ADR로 동시에 상장되어 있는 2개사의 2008년

도 감사보수 평균이 955백만 원이고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평균은 174백만 원으로 감사보수 대비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비율이 18.2%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규제가 한국보다 엄격한 NASDAQ 상장 여부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었다.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LNIFI의 평균과 중위수는 7.05와 7.00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로 사용된 ODI, BOD, SPECIAL, OWNER, MGTYP, AUDCO의 기술통계량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DI의 평균은 0.52로 약 52%의 표본기업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표 3> 기술 통계

| 변수      | 평균값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왜도   | 첨도    | 중위수  |
|---------|------|------|-------|------|------|-------|------|
| LNIFI   | 7.05 | 0.37 | 6.30  | 8.39 | 0.62 | 0.69  | 7.00 |
| ODI     | 0.52 | 0.50 | 0.00  | 1.00 | -    | -     | 1.00 |
| BOD     | 0.35 | 0.16 | 0.00  | 0.67 | 0.00 | -0.41 | 0.33 |
| SPECIAL | 0.15 | 0.36 | 0.00  | 1.00 | -    | -     | 0.00 |
| OWNER   | 0.41 | 0.16 | 0.04  | 0.79 | 0.35 | -0.20 | 0.38 |
| MGTYP   | 0.28 | 0.45 | 0.00  | 1.00 | -    | -     | 0.00 |
| AUDCO   | 0.10 | 0.30 | 0.00  | 1.00 | -    | -     | 0.00 |
| SIZE    | 2.48 | 0.78 | 1.15  | 4.57 | 0.75 | -0.11 | 2.33 |
| GRW     | 0.17 | 0.47 | -0.42 | 1.44 | 7.75 | 77.03 | 0.11 |
| SUB     | 0.51 | 0.50 | 0.00  | 1.00 | -    | -     | 1.00 |

- LNIFI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수의 자연 로그 값.
- ODI : 임원책임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1, 아니면 0
- BOD :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의 비율.
- SPECIAL : 이사회 구성원 중 회계전문가가 존재하면 1, 아니면 0
- OWNER : 대주주 1인과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
- MGTYP : 전문경영자 기업이면 1, 소유경영자 기업이면 0.
- AUDCO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1, 아니면 0.
- SIZE : 전기 총자산의 자연로그를 취한 값.
- GRW : 총자산증가율(전년 대비 총자산 증가액/기초총자산).
- SUB : 51% 이상 지분율을 갖는 자회사 수가 표본 중위수 이상이면 1, 아니면 0.

가입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을 나타내는 *BOD*와 *SPECIAL*의 평균은 각각 0.35와 0.15로서 표본기업 이사회의 35%가 사외이사, 15%가 회계전문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WNER*와 *MGTYP*의 평균은 각각 0.41과 0.28로서 표본기업의 대주주 1인 및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이 4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전문경영자 기업은 표본의 28%를 차지하고 있다.<sup>14)</sup> 자발적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를 나타내는 *AUDCO*의 평균은 0.10으로 표본기업의 약 10%가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5)</sup> 연속변수들이 정규분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성장률을 나타내는 *GRW*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규분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16)</sup>

### 4.3 상관관계분석

〈표 4〉에서는 회귀분석에서 사용한 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더미변수가 많아 순위 상관계수는 생략하였다. 〈표 4〉의 결과를 살펴보면 *SIZE*는 종속변수인 *LNIFI*와의 상관관계도 높지만 *ODI*, *BOD*, *SUB*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SIZE*가 잠재적으로 매우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는 설명변수임과 동시에 다른 설명변수들과의 다중공선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변

수임을 시사한다.<sup>17)</sup> *SIZE*의 설명력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결정 시 기업규모가 가장 중요하다는 회계법인 담당자의 면담 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회귀분석 시 주요 관심변수들이 *SIZE*의 포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계수 값을 갖는가에 분석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 4.4 회귀분석 결과

연구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우선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모형의 경우, 관심변수 중 *ODI*, *BOD*, *OWNER*, *MGTYP*은 유의적인 계수를 가지는 반면, *SPECIAL*과 *AUDCO*는 유의적인 계수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DI*는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가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더 많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를 지불함을 의미하므로 〈가설 1〉을 채택할 수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소송위험 및 기업의 위험회피 정도를 나타내므로 기업의 위험회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많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를 지불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임원책임배상보험료를 더 많이 지불하는 기업일수록 더 많은 감사보수를 지불한다는 강내철(2008)과 일

14)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비록 전문경영자라 하더라도 계열사 지분을 통한 지배로 보아 소유경영자로 분류하였으나, 이를 전문경영자로 분류하면 비율은 0.44로 증가한다.

15) 자산 2조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법적의무 사항이므로 이들 기업들을 1값을 갖는 기업으로 재분류하면 해당 변수의 평균은 0.25로 증가한다.

16) *GRW*의 왜도가 7.75, 첨도가 77.03으로 높아 로그 변환을 실시한 후 회귀분석을 하여 보았다. *GRW*에 1을 더한 후 로그 값을 취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GRW*는 본래의 모형에서처럼 여전히 비유적이었고 나머지 설명변수들과 통제변수들의 계수 값이나 유의성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GRW* 변수의 분포 모습이 연구결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이 통계적작업에 사용한 SAS에서는 3을 차감한 값을 첨도로 제시하기 때문에 〈표 3〉에서 첨도가 음(-)의 숫자를 갖는 것은 정규분포보다 덜 뾰족한 모습의 분포를 의미한다.

17) *ODI*와 *SIZE*, *BOD*와 *SIZE*의 상관계수가 높아 다중공선성이 우려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가장 큰 분산팽창계수(VIF)가 1.515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

〈표 4〉 피어슨 상관관계

|                | <i>LNIFI</i>    | <i>ODI</i>      | <i>BOD</i>      | <i>SPECIAL</i>  | <i>OWNER</i>     | <i>MGTYP</i>     | <i>AUDCO</i>   | <i>SIZE</i>     | <i>GRW</i>     | <i>SUB</i> |
|----------------|-----------------|-----------------|-----------------|-----------------|------------------|------------------|----------------|-----------------|----------------|------------|
| <i>LNIFI</i>   | 1.000           |                 |                 |                 |                  |                  |                |                 |                |            |
| <i>ODI</i>     | 0.478<br>.0001  | 1.000           |                 |                 |                  |                  |                |                 |                |            |
| <i>BOD</i>     | 0.527<br>.0001  | 0.330<br>.0001  | 1.000           |                 |                  |                  |                |                 |                |            |
| <i>SPECIAL</i> | -0.043<br>0.601 | 0.059<br>0.478  | 0.066<br>0.430  | 1.000           |                  |                  |                |                 |                |            |
| <i>OWNER</i>   | -0.115<br>0.167 | 0.090<br>0.279  | -0.118<br>0.156 | -0.054<br>0.517 | 1.000            |                  |                |                 |                |            |
| <i>MGTYP</i>   | -0.020<br>0.806 | -0.025<br>0.758 | -0.107<br>0.200 | 0.167<br>0.044  | 0.027<br>0.739   | 1.000            |                |                 |                |            |
| <i>AUDCO</i>   | 0.100<br>0.230  | 0.054<br>0.520  | 0.215<br>0.009  | 0.171<br>0.040  | 0.067<br>0.419   | 0.032<br>0.7010  | 1.000          |                 |                |            |
| <i>SIZE</i>    | 0.701<br>.0001  | 0.552<br>.0001  | 0.606<br>.0001  | -0.033<br>0.691 | 0.055<br>0.506   | -0.022<br>0.7901 | 0.037<br>0.659 | 1.000           |                |            |
| <i>GRW</i>     | 0.074<br>0.375  | 0.190<br>0.022  | 0.120<br>0.149  | 0.005<br>0.946  | -0.014<br>0.860  | -0.039<br>0.6401 | 0.007<br>0.925 | 0.112<br>0.177  | 1.000          |            |
| <i>SUB</i>     | 0.391<br>.0001  | 0.096<br>0.251  | 0.267<br>0.001  | 0.065<br>0.435  | -0.146<br>0.0794 | -0.192<br>0.079  | 0.013<br>0.874 | 0.435<br><.0001 | 0.040<br>0.626 | 1.000      |

주) 변수의 정의는 〈표 3〉을 참조

관되는 결과이다.

이사회 구성이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 *BOD*로 측정된 이사회 독립성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와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SPECIAL*로 측정된 이사회 전문성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2-1〉은 채택되었으나 〈2-2〉는 기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OWNER*에 대한 회귀계수와 종합하여 해석하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에 대한 추가적인 지불의사는 낮지만 사외이사의 존재가 이를 어느 수준 상쇄시킨다는 주장과 일관되는 결과가

다. 또한 〈가설 2-1〉에 관한 결과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이 좋을수록 감사보수가 높다고 보고한 손평식 등(2007)의 결과와 일관된다. 반면, 〈가설 2-2〉가 기각된 것은 이사회 내 회계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회계투명성에 대한 추가 투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손성규 등(2004)의 결과와 일관된다.

대리인 비용에 관한 〈가설 3-1〉과 〈가설 3-2〉는 모두 채택되었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에 대한 추가 지불의사에 대주주지분율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대주주가 경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투자가

〈표 5〉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와 감사보수의 결정모형 결과

| 구분             |      |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모형                   | 감사보수모형                            |
|----------------|------|-----------------------------------|-----------------------------------|
| 종속변수           |      | <i>LNIFI</i>                      | <i>LNAF</i>                       |
| 독립변수           | 예상부호 |                                   |                                   |
| <i>ODI</i>     | +    | 0.128<br>(2.44 <sup>***</sup> )   | 0.057<br>(1.93 <sup>**</sup> )    |
| <i>BOD</i>     | +    | 0.292<br>(1.66 <sup>**</sup> )    | 0.065<br>(0.65)                   |
| <i>SPECIAL</i> | +    | -0.098<br>(-1.54)                 | -0.028<br>(-0.81)                 |
| <i>OWNER</i>   | -    | -0.323<br>(-2.33 <sup>***</sup> ) | -0.258<br>(-3.27 <sup>***</sup> ) |
| <i>MGTYP</i>   | +    | 0.090<br>(1.85 <sup>**</sup> )    | -0.013<br>(-0.48)                 |
| <i>AUDCO</i>   | +/-  | 0.078<br>(1.08)                   | 0.053<br>(1.30)                   |
| <i>SIZE</i>    | +    | 0.238<br>(5.45 <sup>***</sup> )   | 0.329<br>(13.20 <sup>***</sup> )  |
| <i>GRW</i>     | +    | -0.021<br>(-0.46)                 | -0.063<br>(-2.41 <sup>***</sup> ) |
| <i>SUB</i>     | +    | 0.093<br>(1.91 <sup>**</sup> )    | 0.098<br>(3.53 <sup>***</sup> )   |
| F값             |      | 19.73 <sup>***</sup>              | 71.46 <sup>***</sup>              |
| 수정 $R^2$       |      | 0.5411                            | 0.8160                            |

주1) <sup>\*\*\*</sup>, <sup>\*\*</sup>, <sup>\*</sup> 는 각각 1%, 5%, 10% 수준의 유의함을 나타냄.

주2) *AUDCO*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는 단측검증임.

주3) 변수의 정의는 〈표 3〉을 참조.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기업은 최소한의 법적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범위까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를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발적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나타내는 *AUDCO*는 유의적인 계수를 갖지 않아 〈가설 4〉는 기각되었는데 이는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기업의 이익조정 행위와 관련성이 적다는 김병호(2006) 등의 결과와 간접적으로 일치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회귀모형의 구조변수로

사용된 *SIZE*, *GRW*, *SUB* 중 *SIZE*와 *SUB*의 계수가 유의적인 값을 보였다. 특히, *SIZE*는 *OWNER*와 더불어 회귀계수의 경제적 의미와 통계적 유의성이 큰 변수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와 매우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기업규모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ODI*, *BOD*, *OWNER*, *MGTYP*의 관심변수들이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진다는 점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결정모형에 관한 실무자와의 면담에서 사전

적으로 조사된 유일한 설명변수는 기업규모였으나 해당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본 논문의 관심변수들이 유의적인 계수 값을 나타내고 있다.<sup>18)19)</sup>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결정모형을 감사보수 결정모형과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설명변수들을 이용하여 감사보수 변수인 *LNAF*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5>의 두 번째 열을 살펴보면 감사보수 모형의 경우, *ODI*, *OWNER*, *SIZE*, *GRW*, *SUB* 변수들이 유의적인 계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흥미로운 점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모형에서의 관심변수들이 감사보수 결정모형에서는 대부분 설명력을 상실하는 대신 구조변수들인 *SIZE*, *GRW*, *SUB*가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들 구조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 관심변수들은 경제적 크기나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모형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감사보수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합리적 수준의 감사위험을 전제로 수행되는 재무제표감사의 보수를 결정할 때 구조변수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결정은 기업의 추가 지불의사에 의해 결정되므로 표본기업들의 *clientelle* 특성이 매우 잘 나타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감사보수(*LNAF*)는 기업규모(*SIZE*), 성장성(*GRW*), 자회사 수(*SUB*)와 같은 구조변수들에 의해 더 잘 설명이 되는 것에 비해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LNIFI*)는 *ODI*, *BOD*, *OWNER*, *MGTYP*과 같은 *clientelle* 변수들에 의

해 더 잘 설명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합리적 수준의 감사위험을 전제로 하지 않는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모형에서 표본기업들의 *clientelle* 특성에 따른 한계적 지불의사가 더 잘 보수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결정모형과 관련하여 실무계로부터 *SIZE*와 더불어 가장 많이 제안을 받은 설명변수는 피감사인의 재무건전성이다. 재무건전성 변수에 대한 실무적 직관은 재무건전성이 좋은 기업은 높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를 지불할 용의와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최정호와 양해성(2008)도 기업지배구조가 우량할수록 감사보수가 적을 것이라는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를 얻은 이유를 기업의 재무건전성에서 찾았다. 즉, 기업지배구조가 좋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아 더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더 높은 감사보수를 지불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재무건전성이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시장을 포함한 감사시장이 경쟁적이라면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관련 없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검토보수가 결정될 것이다. 반대로 감사시장이 공급자 독과점시장이라면 감사인은 가격차별을 통해 피 감사인의 잉여를 감사인의 잉여로 대체하려 할 것이며, 이는 재무적 건전성이 좋은 피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모형에 재무건전성 변수인 *CFO*(=영업현금흐름/총부채)를 포함한 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표 6>에

18)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회계법인 파트너들은 자산총계와 매출액 같은 기업규모 요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결정에 가장 중요하고, 그밖에 예상투입시간, 복수회사 수입여부에 따른 할인을 등을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19) 외부감사와 마찬가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도 초도검토 시의 숙련도가 반영된다면 재검토시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가 할인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144개의 년×기업의 관찰치 중 2개년 및 3개년 모두 데이터가 존재하는 47개의 관찰치를 사용하여 t-test를 수행하였다. 검토보수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초도검토 표본과 계속검토 표본으로 구분하여 평균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두 그룹 간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표 6〉 재무건전성을 반영한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결정모형 결과

| 종속변수           |      | 모형1                               | 모형5                              |
|----------------|------|-----------------------------------|----------------------------------|
| 독립변수           | 예상부호 | <i>LNIFI</i>                      | <i>LNIFI</i>                     |
| <i>ODI</i>     | +    | 0.128<br>(2.44 <sup>***</sup> )   | 0.129<br>(2.45 <sup>***</sup> )  |
| <i>BOD</i>     | +    | 0.292<br>(1.66 <sup>**</sup> )    | 0.299<br>(1.68 <sup>**</sup> )   |
| <i>SPECIAL</i> | +    | -0.098<br>(-1.54)                 | -0.093<br>(-1.53)                |
| <i>OWNER</i>   | -    | -0.323<br>(-2.33 <sup>***</sup> ) | -0.320<br>(-2.30 <sup>**</sup> ) |
| <i>MGTYP</i>   | +    | 0.090<br>(1.85 <sup>**</sup> )    | 0.089<br>(1.84 <sup>**</sup> )   |
| <i>AUDCO</i>   | +/-  | 0.078<br>(1.08)                   | 0.075<br>(1.02)                  |
| <i>SIZE</i>    | +    | 0.238<br>(5.45 <sup>***</sup> )   | 0.236<br>(5.35 <sup>***</sup> )  |
| <i>GRW</i>     | +    | -0.021<br>(-0.46)                 | -0.020<br>(-0.45)                |
| <i>SUB</i>     | +    | 0.093<br>(1.91 <sup>**</sup> )    | 0.095<br>(1.93 <sup>**</sup> )   |
| <i>CFO</i>     | +    |                                   | 0.011<br>(0.32)                  |
| F값             |      | 19.73 <sup>***</sup>              | 17.65 <sup>***</sup>             |
| 수정 $R^2$       |      | 0.5411                            | 0.5380                           |

주1) <sup>\*\*\*</sup>, <sup>\*\*</sup>, <sup>\*</sup> 는 각각 1%, 5%, 10% 수준의 유의함을 나타냄.

주2) *AUDCO*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는 단측검증에 대한 통계치임.

주3) 변수의 정의는 〈표 3〉을 참조

정리하였다.

〈표 6〉의 결과를 살펴보면 *CFO*를 추가하는 것이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결정모형을 개선시키지 못함을 알 수 있다. *CFO*의 계수는 유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래의 모형에서 유의적인 값을 갖는 설명변수들의 값이 대부분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실무적 직관으로 보기에는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이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clientelle 변수들로 표현되는 요인들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시장균형의 결과라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의 도입이 전체 감사보수를 추가로 증가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가 외부감사상의 내부통제제도의 평가와 중첩성이 많다고 감사인과 기업이 모두 인지한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

〈표 7〉 총감사보수와 초도 내부회계검토보수의 차이

|                 | 평균     | 표준오차   | t-값                             |
|-----------------|--------|--------|---------------------------------|
| 총감사보수 차이 비율     | 0.2184 | 0.0431 |                                 |
|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비율 | 0.1448 | 0.0142 |                                 |
| 비율의 차이          | 0.0736 | 0.0453 | $1.62 > t_{\alpha=0.10} = 1.31$ |

표감사의 내부통제제도 평가와 대체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를 신규로 청구하더라도 감사보수 총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가 재무제표감사상의 내부통제제도의 평가와 중첩되는 부분이외에도 추가적인 기능을 한다고 양자가 인지한다면 감사보수 총액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만큼 증가할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를 독립적인 항목으로 청구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이므로 본 논문의 표본기업 중 2005년과 2006년에 동시에 표본에 포함된 33개 기업에 대해 ①2005년도와 2006년도의 총감사보수 차이와 ②2007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수료를 비교하였다.<sup>20)</sup>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제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연도가 2006년이므로 2006년과 2005년의 총감사보수 차액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가 반영된 금액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의 연도별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표본에서 사용한 2007년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를 2006년의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의 대응치로 사용하여 양 비율을 비교하였다.

〈표 7〉의 결과를 살펴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가 포함된 2006년 총감사보수의 증가액은 2005

년 대비 21.84%인 반면 실제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는 2005년 총감사보수 대비 14.48%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총감사보수 증가액이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가설을 10%의 유의수준에서 채택할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2006년도 감사보수 지불 시에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를 포함하여 지불한 것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의 도입으로 총 감사보수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들에 적용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가 재무제표감사와 차별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되는지를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2004년부터 국내 기업들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는 내용상 재무제표감사의 내부통제제도 평가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래의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기능 수행이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합리적 수준의 감사위험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외부

20) 구체적으로는 총 감사보수의 차이를 2005년도 총감사보수로 나눈 비율을 구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의 경우에도 2005년 총감사보수로 나눈 비율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감사에 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는 위험 수준이 낮으므로 감사대상기업의 특성과 보수 결정 요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자료를 이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서비스와 외부감사서비스의 가격 대체성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의 결정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2007년부터 2009년간 특정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94개 기업의 144개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표본기업-연도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와 재무제표감사상의 내부통제제도 평가가 갖는 중첩성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는 감사보수와 대체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대상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를 추가적으로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보수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의 결정요인을 소송위험변수와 지배구조변수로 구분한 후, 후자를 다시 이사회 구성 관련변수, 소유구조 관련변수, 감사위원회 관련변수로 세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송위험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많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를 지불하였다. 둘째, 이사회구성 관련변수들의 경우, 이사회 의 사외이사 비율로 측정된 이사회의 독립성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증가와 관련이 있으나, 이사회 회계전문가 존재 여부로 측정된 이사회의 전문성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주주지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전문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일수록 더 많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자는 대주주의 모니터링 역할, 후자는 주주

와 전문경영자와의 대리인비용에 의한 설명과 일관되는 실증결과이다. 넷째,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변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에 대한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업의 구조를 나타내는 변수들로는 기업규모, 성장률, 자회사의 수를 사용하였는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그리고 자회사가 많은 기업일수록 더 많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규모가 클수록 자회사가 많을수록 복잡성의 증가로 외부감사인의 검토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증가율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결정모형을 감사보수 결정모형과 비교한 결과, 전자에서는 소송위험변수, 사외이사비율, 경영자유형, 대주주지분율이 유의적인 설명력을 가지는 것에 비해 후자에서는 소송위험과 대주주지분율만이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기업규모, 자산증가율, 자회사 수 등과 같이 기업구조를 나타내는 변수들은 감사보수 결정모형에서는 설명력을 갖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결정모형에서는 상대적으로 설명력을 덜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한 두 가지 결과는 감사위험을 통제해야 하는 외부감사의 경우에는 기업규모와 같은 구조변수들이 더 설명력을 갖지만 한계적 지불의사가 보다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결정모형에서는 소송위험변수, 사외이사비율, 경영자유형, 대주주지분율과 같은 기업 clientelle 변수들이 더 설명력을 가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자료를 이용한 최초의 논문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수 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회계법인의 감사대상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소수표본 연구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강내철 (2008), "소송위험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비재무적 접근." **회계정보연구**, 제26권 제2호, 133-151.
- 권수영, 김문철 (2001), "감사보수의 결정요인과 감사보수 체계변화로 인한 효과분석." **회계학연구**, 제26권 제2호, 115-143.
- 권수영, 김문철, 정태진 (2005),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0권 제4호, 47-76.
- 김광호, 김대근, 전규안 (2008),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검토결과와 이익조정간의 관련성." **회계정보연구**, 제26권 제4호, 171-200.
- 김명인, 최종학, 서민정 (2008), "감사인의 감사 및 비감사보수와 고객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사이의 관계." **회계학연구**, 제33권 제4호, 175-210.
- 김병호 (2006), "한국과 미국 기업의 이사회제도 차이가 기업재무보고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비교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4권 제3호, 173-198.
- 김양민 (2009), "대리인 이론의 비판적 분석과 기업지배구조연구의 새로운 시각." **인사조직연구**, 제17권 2호, 155-194.
- 김영규, 김달현, 류수복 (2004), "이사회 특성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규모, 구성 및 경영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증권학회 발표논문집, (1차 정기학술발표회 논문).
- 김정애, 이성희 (2008),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식조사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6권 제4호, 331-362.
- 김정애, 최종서 (2006),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의 특성차이가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24권 제4호, 251-274.
- 김중대, 조문기 (2007), "경영자지분율과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 **회계학연구**, 제32권 제4호, 1-27.
- 김효진, 윤석순 (2010), "소유지배과리도가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28권 제2호, 1-13.
- 나영, 장대준 (2008), "기업의 소유 및 전문경영방식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26권 제3호, 279-307.
- 노준화, 배길수, 전영순 (2003), "지정감사인이 더 높은 보수를 받는가?" **회계학연구**, 제28권 제4호, 177-202.
- 박경서, 백제승 (2001), "재벌의 대주주경영자는 비재벌기업의 대주주경영자와 얼마나 다른가: 한국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자본구조 및 기업가치에 관한 실증연구." **재무연구**, 제22호, 89-130.
- 박경서, 이은정, 장하성 (2003), "한국 상장기업의 사외이사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 발표논문집 (2003년 제4차 정기학술발표회 발표논문).
- 박종일, 김완희 (2006), "이사회 구성과 기업가치." **회계정보연구**, 제24권 제1호, 91-123.
- 손성규, 최정호, 이은철 (2004), "감사위원회 효과: 회계오류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9권 제3호, 61-90.
- 손성규, 정기위 (2009),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도입이 회계오류의 발생에 미친 영향." **회계저널**, 제18권 제2호, 221-249.
- 손평식, 윤현동 (2007), "지배구조와 감사보수와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0권 제6호, 2667-2686.
- 신호영 (2006), "감사위원회 도입과 이익조정 관련성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4권 제1호, 43-66.
- 신호영, 최우정 (2007), "감사위원회 특성과 이익의 정보효과." **회계정보연구**, 제25권 제1호, 175-195.

- 신현걸 (2007),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 현황분석," **회계저널**, 제16권 제1호, 107-128.
- 신현환, 이상철, 장진호 (2004), "외부감사주체와 기업가치," **재무연구**, 제17권 제1호, 41-72.
- 이경태, 최종원 (2006), "기업의 지배구조가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1권 제4호, 53-84.
- 이경태, 손성규, 최종원 (2007), "소송위험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16(1), 53-79.
- 이명곤, 정석우, 이재은 (2007),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도입 효과 및 개선과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 관리제도개선위원회의 연구보고서. 1-239.
- 이명곤, 최상태, 장석진 (2007),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취약점: 이익조정 그리고 정보위험과의 관련성," **회계와감사연구**, 제46호, 61-97.
- 이상철, 이경태 (2003), "감사위원회 도입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8권 제3호, 143-177.
- 이석영, 김호중 (2005), "회계법인의 감사수임료 수준에 관한 실증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3권 제4호, 99-131.
- 전규안, 최종학, 박종일 (2004), "감사위원회 설치와 이익조정사이의 관계," **회계학연구**, 제29권 제1호, 143-176.
- 주인기, 최관 (1997), 외부감사보수 체계 개선방안. 외부감사보수체계특별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
- 주인기, 최관, 정종문, 김정국 (1999), 적정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 조용언, 김확열, 최미화 (2009), "사전적 감사소송위험 및 담보위험과 감사품질," **회계정보연구**, 제27권 제3호, 1-30
- 조현우, 유경연 (2006), "내부회계 관리제도와 회계정보의 신뢰성," **회계와감사연구**, 제44호, 119-145.
- 최관, 조현우 (2007),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 32권 제1호, 173-207.
- 최관, 백원선 (1998), "감사인의 유형과 감사 품질: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49-75.
- 최정호, 양해성 (2008), "기업지배구조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의 관련성 분석," **회계정보연구**, 제26권 제1호, 59-77.
- 최종원, 이경태 (2008), "잠재적 소송비용이 보수주의적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3권 제3호, 229-260.
- Abbott, L. and S. Parker (2000), "Auditor Selection and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Journal of Auditing Practice and Theory* 19, 47-66.
- Agrawal, A. and C. Knoeber (1996), "Firm Performance and Mechanisms to Control Agency Problems between Managers and Shareholders,"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31, 377-396.
- Asare, S. J. Cohen and G. Trompeter (2002), "The Effect of Management Integrity and Non-audit Services on Client Acceptance and Staffing Decision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Florida.
- Ashbaugh-Skaife, H.D. Collins, and W. Kinney (2005), "The Discovery and Consequences of Internal Control Deficiencies Prior to SOX-Mandated Audit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Wisconsin, University of Iowa, and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Basu, S (1997), "The conservatism principle and the asymmetric timeliness of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24(1), 3 - 37
- Beasley, M.S. and S.E. Salterio(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board characteristics and voluntary improvements in audit committee composition and experienc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18(4), 539-570.
- Beatty, R. P (1989), "Auditor Reputation and the Pricing of Initial Public Offerings" *The*

- Accounting Review* Vol 64(4), 693-709
- Bell, T. B., W. R. Landsman, and D.A. Shackelford (2001), "Auditors' Perceived Business Risk and Audit Fees: Analysis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9, 35-43.
- Choi, J. J, S.W. Park, and S. Yoo (2004), Do Outside Directors Enhance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an Emerging Market. Working Paper. Temple University.
- Copley, P. A. M, S. Doucat, and K. M. Graver (1992), "A Simultaneous Equations Analysis of Audit Quality and Prices." Working Paper. The University of Georgia.
- DeAngelo, H. and L. DeAngelo (2000), "Controlling Stockholders and the Disciplinary Role of Corporate Payout Policy: A Study of the Times Mirror Compan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56(2), 153-207.
- Dechow. P. and I. Dichev (2002), "The Quality of Accruals and Earnings: The Role of Accrual Estimation Error," *The Accounting Review* 77, 35-59.
- Denis, D.K. and J. McConnel (2003),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38, 1-36.
- Francis. J. R (1984), "The Effect of Audit Firm Size on Audit Prices: A Study of the Australian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6(2), 33-151.
- Francis, J.R. and Wilson, E.R. (1988), "Auditor changes: a joint test of theories relating to agency costs and auditor differentiation", *The Accounting Review* 63(4), 663-682.
- Joh, S (2003),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Profitability: Evidence from Korea before the Economic Cri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68, 287-322.
- Kinney, W.R.JR., and M.L. Shepardson (2011), "Do Control Effectiveness Disclosures Require SOX 404(b) Internal Control Audits? A Natural Experiment with Small U.S. Public Compani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ume 49(2), 413 - 448
- Klein, A (2002), "Audit Committee, Board of Director Characteristics,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3, 375-400.
- Krishnan, G. V., and G. Visvanathan(2008), Does the SOX Definition of an Accounting Expert Matter?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 Committee Directors' Accounting Expertise and Accounting Conservatism.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25(3), 827-858
- McMullen, D. and K. Raghuraman (1996), "Enhancing Audit Committee Effectiveness," *Journal of Accountancy* 182, 79-82.
- O'Keefe, T. B., D. A. Simunic, and M. T. Stein (1994), "The Production of Audit Services: Evidence from a Major Public Accounting Firm,"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2, 241-261.
- Palmrose, A (1986), "Audit Fees and Audit Size: Further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24(1), 97-110.
- Pong. C. M. and G. Whittington (1994), "The Determinants of Audit Fees: Some Empirical Models," *Journal of Business Finance Accounting* Vol 21(8), 1071-1095.
- Seetharaman, A. ,F. A. Gul and S.G. Lynn (2002), "Litigation Risk and Audit Fees: Evidence from UK Firms Cross Listed on US market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3, 91-115.

- Simon, D. and J. Francis (1988), "The Effects of Auditor Change on Audit Fees: Tests of Price Cutting and Price Recovery," *The Accounting Review* (April): 255-269.
- Simunic, D (1980), "The Pricing of Audit Service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18(1), 161-190.
- Shleifer, A. and R. Vishny(1986). "Large shareholders and corporate contro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 461-468.
- Xie, B., W. Davidson and P. Dadalt (2003), "Earnings Management and Corporate Governance: The Roles of the Board and the Audit Committee," *Journals of Corporate Finance* 9, 295-316.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Review Fee

Hong Taig Choi\* · Taehee Lee\*\* · Changmok Hong\*\*\*

### Abstract

The present paper, using the undisclosed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ICFR) review fee data, investigates whether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exhibit differential explanatory power over audit fees despite their many overlapping features. Given that Korean firms started to adopt actively the ICFR system since 2004, it has reached a critical juncture in its effort to evaluate empirically the effectiveness of the adopted system. Also, unlike the external audit service in which the targeted audit risk should come into play, ICFR review is relatively free from such audit risk i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CFR review fee and its determining firm characteristics. Our study, which examined cross-sectional determinants of ICFR review fee and whether there exists substitutability between ICFR review fee and financial statement audit fee, has never been done before in Korea.

The empirical analysis used data from 94 auditee firms during 2007-2009 period. A Big 4 auditor firm in Korea performed external audits and ICFR reviews for all 94 sample firms. After eliminating some yearly data due to data availability, 144 firm-year data were obtained from the sample firms for the analysis. Firm-year observations are almost evenly distributed among 28 industries. Over the sample period, the average ICFR review fee and audit fee is 17 million Won, 138 million Won, respectively. The average ICFR review fee is about 12.3% of the average audit fee.

Despite many of the overlapping features between financial statement audit and ICFR review, the two do not exhibit price substitutability. That is, the auditee firms pay statistically

---

\* Assistant Professor, Saejong Cyber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okmin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okmin University

significant amount of ICFR review fees over and beyond extant audit fees. In other words, the external audit fees do not decrease despite of firms paying ICFR review fee in addition to external audit fees. This clearly shows auditee firms purchasing different service from the audit firm at least in the early years of adoption.

We classified the explanatory variables into auditor litigation risk variables and some governance related variables. The latter is again sub-grouped into BOD (board of directors) composition-related, ownership-related, and audit committee-related variables. Auditor litigation risk is proxied by whether a firm has an officer and director insurance(ODI). BOD independence is measured by the percentage of outside directors. A dummy variable is used to proxy BOD expertise. If there is at least one accounting expert on the board, the dummy variable takes the value of 1, otherwise 0. Potential agency costs faced by an auditee firm is measured by the firm's ownership structure. Two proxy variables are used: the first one is the shareholding percentage of the largest owner, and the second one is the management shareholdings. The last governance-related variable represent whether the firm has an audit committee. Several control variables are added to the ICFR review fee model. They are firm size, growth rate, and the number of subsidiaries. We expect the following relationship between ICFR review fee and explanatory variables. Positive relations are expected for ODI, BOD independence, BOD expertise, audit committee presence, firm size, growth rate, and the number of subsidiaries. Negative relation is expected for the potential agency cost variables, the largest owner's shareholdings and managers' shareholdings.

Ceteris paribus, firms with higher litigation risks, external director ratios in BOD and lower major shareholder's ownership ratios and non-owner manager firms exhibited higher payment for the ICFR review service. The presence of an accounting expert in BOD did not have any explanatory power.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extant agency costs explanation of major shareholder's monitoring effect and shareholder/ non-owner manager agency costs. Also, the presence of the audit committee did not render additional explanatory power. Regarding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the sample firms with larger size and more subsidiary firms paid higher ICFR review fees. ICFR review fee and external audit fee data are independently regressed on the same explanatory firm variables. In the ICFR review fee regression, clientelle variables such as litigation risk, external directors ratio, management type, major shareholding ratio exhibit significant explanatory power. In contrast, in the audit fee regression, structural variables such as firm size, asset growth rate, and the number of subsidiaries display significant explanatory variables. The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argument that firms have to accept

their audit risks as given and determine the audit fees accordingly, whereas firms do not have to consider audit risks when determining their ICFR review fees. This may shed light on why prior research document conflicting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 fee and firm clientele variables.

Our study, which is the first one using ICFR review fee data, contributes to better understand the determinants of ICFR review fee, and also offers some helpful insights to establish ICFR-related policy in the new IFRS regime. However,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due to the small sample obtained from a single Big 4 firm.

Key words: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ICFR Review Fee, Audit Fee